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2018.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2018.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ISTEP

본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은 제재조치 과정에서 참고 가능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중심으로 제재조치 대상·방식·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 부처별 근거 법률에 따라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Contents

제1장 제재조치 개요 ····· 1

제1절 법적 근거 ····· 1

1.「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 1

2.「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내지 제27조의5 ····· 2

3. 부처별 세부규정 ····· 5

제2절 연혁 ····· 6

제3절 주요 용어 ····· 7

1. 국가연구개발사업 ····· 7

2. 참여제한 ····· 7

3. 회수 ····· 7

4. 사업비 환수 ····· 10

5. 제재부가금 ····· 10

6. 연구부정행위 ····· 10

제4절 해외 동향 ····· 12

1. 미국 ····· 12

2. 일본 ····· 14

제2장 제재조치 ····· 15

제1절 제재조치 주체 ····· 15

제2절 제재조치 대상 및 기준 ····· 15

1. 범위 ····· 15

2. 기준 ····· 16

3. 승계 여부 ····· 18

4. 제재조치 처분시 감면 기준 ····· 19

제3절 제재조치 평가단 ····· 19
1. 제재조치 평가단의 역할 ····· 19
2.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 20
제4절 제재조치 절차 ····· 21
1. 절차 개요 ····· 21
2. 처분 사전통지(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 21
3. 이의신청 ····· 22
4. 제재조치 통보 ····· 23
5. 제재조치 등록(참여제한 등) ····· 26
제5절 참여제한의 효력 ····· 27
1. 참여제한 기산일 ····· 27
2. 참여제한 기간 합산 ····· 28
3. 연구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한 조치 ····· 30
4. 과제참여 가능 시점 ····· 30
제6절 사업비 환수 ····· 31
1. 환수 대상 ····· 31
2. 환수금 납입 ····· 31
3. 연구장비 등 현물환수 가능 여부 ····· 31
4. 환수금 납부 기한 ····· 32
5. 환수금 납부기한 연장기준 및 절차 ····· 32
6. 환수금 기한 내 미납 시 처리 ····· 33
제7절 국세체납처분 ····· 33
1. 국세체납처분의 개념 ····· 33
2. 국세체납처분 절차 ····· 34
3.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 35
4. 환수금 납부 대상기관의 부도·폐업·회생·파산 시 처리 방법 ····· 37
5. 소멸시효 ····· 38

제8절 제재부가금 절차 ····· 39
1. 처분 대상 ····· 39
2. 납부 기한 ····· 39
3. 수납 후 처리 ····· 40
4. 기한 내 미납 시 처리(사업비 환수 절차 참고) ····· 40
5. 소멸시효 ····· 40

제3장 제재조치 사유별 처분기준 ····· 41

제1절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 41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된 경우 ····· 43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44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45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6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46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47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48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49

제2절 제재부가금 ····· 50
1. 산정 기준 ····· 50
2. 가중 ····· 50
3. 감경 ····· 51

제1장 제재조치 개요

제1절 법적 근거

1.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부정, 사용용도 외 사용 등에 해당하면 5년(동일 참여제한 사유 최대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 또는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제1항)
-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제7항)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3.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7조4, 제27조의5

- (제27조)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감액 등에 관한 기준
- (제27조의2)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 기준
- (제27조의3)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 (제27조의4)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 (제27조의5) 제재부가금 부과 및 납부 절차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⑪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⑫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이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2 제2호가목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표 5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제27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재조치가 가능

3. 부처별 세부규정

각 부처별 세부규정은 상위 근거 법률에 반하지 않아야 함

부 처	세 부 규 정
교육부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기상청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산림청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경찰청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상위 근거 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상위 근거 법률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절 연혁

- ’01. 12월 국가R&D사업 제재 근거 마련
  - 참여제한 최대 2년 → ’05. 3월 최대 3년 → ’08. 5월 최대 5년으로 확대(공동관리규정 제20조)
- ’05. 3월 참여제한 정보 공동관리
  - 국가과학기술정보망 → 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 ’10. 2월 사업비 환수 제도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신설(참여제한 내용 포함)
- ’14. 5월 제재부가금 제도 신설* 및 제재 대상 확대**(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연구비 용도외 사용 시 사업비 환수 외 징벌적 과징금 부과(부정 사용액의 5배 이내)
  **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기업 → 참여연구원, 단체, 소속 임·직원 추가
- ’14. 12월 환수금 미납 시 강제 징수 근거 마련* 및 환수금 처분 승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양도, 합병 시 양수자 또는 합병 기업에게 미납 환수금 처분 승계
- ’15. 6월 환수금 미납 시 제재근거 신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15. 12월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시 10년 범위 내 참여제한 기간 확대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개정)
- ’16. 7월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시 10년 범위 내 참여제한 처분 세부 기준 마련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 ’17. 5월 제재조치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등록 신설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3절 주요 용어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2.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외 사용 등 제재조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참여제한 제도의 취지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협약해약(공동관리규정 제11조 제1항 제9호) 또는 협약변경(공동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을 고려해야 함

3. 회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① 연구개발비에서 공동관리규정 제1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사용잔액이 있거나,

② 공동관리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공동관리규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부당집행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함(공동관리규정 제19조의 제4항)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생략)

● 부당집행금액은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2에 명시되어 있음

-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2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에 명시된 내용 중, 사안에 따라 연구과제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본인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라면 '용도외 사용'으로 보고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연구비를 해당 과제 연구 수행에 사용하였으나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규정위반 등의 사안은 제재조치대상이 아니며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2 '2.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에 따라 정산을 통한 회수를 진행해야 함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2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학생인건비를 합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19조제1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4. 사업비 환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재조치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등에 의한 사업비 환수는 제재조치에 해당함

5. 제재부가금

-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비 환수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서 용도 외 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되는 금액

6. 연구부정행위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규정(제3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

  ※ 이외에도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 지침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7호)'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제재심의 대상이 됨

  -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위력행사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 등에 대한 심사가 부실하거나 조직위원, 심사위원 등이 부재하거나 저명한 연구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운영하는 등의 부실한 학회에 연구자가 고의적·반복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판명되어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를 특허의 발명자 및 출원인 등에서 제외하고 성과물을 독점하는 행위
  - 이외에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및 기관 자체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윤리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제4절 해외 동향

1. 미국

가. 참여제한

- 정부R&D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보조금 및 용역(Grants and Agreements) 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운영
- 정부R&D의 경우 연방정부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서 비-조달형 계약(non-procurement transaction)으로 구분

  * 연방법률에 따라 유효하게 제정된 연방행정법규 및 규칙은 미국 연방 전체에 주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 계약자가 조사 또는 법적인 절차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suspension)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부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debarment)할 수 있음 (2 CFR part 180)

  ※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연구비 용도외 사용(false claim) 포함됨

-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美 법무부 감찰국(OIG;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또는 美 사법부(DOJ; Department Of Justice)에서 참여제한이 되는 사업의 범위 및 기간 등 결정

  ※ 참여제한 기간은 통상 수년으로 결정되나 영구적인 참여제한도 가능

미국의 주요 참여제한 사유

(a) 다음의 사유로 형사 상 유죄판결(conviction) 또는 민사 판결(civil judgement)를 받은 경우
 (1) 공공·민간 계약·거래계약의 체결 수행과 관련하여 행한 사기(fraud) 및 범죄행위(criminal offense)
 (2)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정하는 반독점규정의 위반
 (3) 횡령(embezzlement), 절도(theft), 위조(forgery), 뇌물(bribery), 변조(falsification), 기록삭제(destruction of data), 입출금내역 허위생성(making false statements), 조세포탈(tax evasion), 장물취득(receiving stolen property), 허위청구(making false claims), 재판방해(obstruction of justice)
 (4) 기타 진실성 또는 윤리성에 문제가 있는 행위
(b) 다음과 같이 공공계약 및 거래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의 무결성에 큰 손상을 준 경우
 (1) 하나 이상의 공공계약·거래의 계약조항을 이용해 고의로 실패한 경우
 (2) 하나 이상의 공공계약·거래에서 실패하였거나 낮은 성과를 낸 경우

(3) 공공계약·거래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또는 요구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 이 하 생 략 –

나.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 美 연방정부계약에서의 '허위청구(False claim)'가 우리나라의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따른 제재조치인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유사한 개념으로,

- 허위청구를 한 경우 형사상 책임 등과 별개로 Contract Dispute Act (41 USC 7103)에 따라 허위청구금 상당액을 배상하고, False Claim Act (31 USC 3729)에 따라 허위청구금의 3배까지 민사금전벌*을 부담하며, Forfeiture (28 USC 2514)에 따라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제재조치를 받게 됨

  * 행정기관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형벌의 일종이 아닌 금전벌
  ** 해당부분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시켜 부당이득 혹은 기존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등을 불허

-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계약자가 청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것이 사실의 잘못된 제시(mis-presentation of fact)나 사기(fraud)에서 비롯된 경우 연방정부에 청구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역으로 美 정부에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음

② 계약자가 알면서(knowingly) 허위청구를 하거나 청구에 필요한 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5,000달러 이상 10,000달러 이하의 민사금전벌과 美 정부 손해액 3배(일부 조건 충족 시 2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부담하게 됨

  ※ 각 연방기관에 설치된 감찰관실(OIG)의 조사에서 허위청구가 발견되는 경우 통상 사법부(DOJ)로 이관되고 DOJ가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 DOJ가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15만 달러 이하의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연방기관이 환수하는 것이 가능 (34 CFR Part 33)
  ※ 허위청구법(False Claim Act)은 1863년 링컨 대통령 시기에 제정되어 일명 '링컨법'으로 불리는데, 내부고발자 등 개인 및 美 연방정부 모두가 연방정부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특징

③ 계약자가 美 연방정부에 대해 증거, 진술 등에 있어서 부정하게(corruptly) 기망(fraud)을 행하거나 행하려고 한 경우 그 사람의 청구권은 상실됨

2. 일본

가. 참여제한

- 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보조금취급규정(科學究費補助金取扱規程)”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학연구비보조금사업의 참여를 제한 (기금 등의 다른 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① 과학연구비보조금을 부정사용한 자 : 과학연구비보조금 반환 명령이 있는 연도의 차년도부터 1~10년

  ② 전호의 관련자와 과학연구비보조금 부정사용을 공모한 사람 : 전호의 기간과 동일

  ③ 과학연구비보조금의 교부가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 과학연구비보조금을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다하지 못한 보조사업자 : 과학연구비보조금 반환 명령이 있는 연도의 차년도부터 1~2년

  ④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과학연구비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에 공모한 자 : 과학연구비보조금 반환 명령이 있는 연도의 차년도부터 5년

  ⑤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 사람(해당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 논문 등에 대한 책임자를 포함)은 부정행위가 인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1~10년

※ 일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날조, 변조, 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과학연구비조성사업 운영방침)을 두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

나. 사업비 환수

- 문부과학성의 “과학연구비보조금사용에 대해 연구기관의 사무(科學研究費補助金の使用について各研究機?が行うべき事務等)”에 따라,
- 연구기관은 연구자를 대신하여 연구비에 대한 관리 및 연구비 사용에 따른 제반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비 적정집행을 위한 사무체제 정비 및 검수 등을 담당하는데,
- 연구비의 부적정 집행 혐의가 있고 연구기관이 관리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기관이 부적정 사용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문부과학대신에게 반환

제2장 제재조치

제1절 제재조치의 주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
- 법령에 별도의 근거가 없는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조치 처분·통보·관리 권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음*
  - 단, 제재조치 업무 중 하나인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는 대행하게 할 수 있음(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8항)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제재 참여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참여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

제2절 제재조치 대상 및 기준

1. 범위

- 제재조치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임(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모두 제재조치 가능
  - 단, 제재조치 중 사업비 환수는 ‘출연하거나 보조한’ 기관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그 기관에 속한 개인에게 할 수 없음

※ 각 기관·기업에 대한 정의(공동관리규정 제2조)

기관	정의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

2. 기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중 위반행위에 귀책이 있는 자에게 제재조치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 제1항

>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총괄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등에 대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생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제1항

> 제44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생략)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9조 제1항

> 제29조(제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생략)

나. 기관·단체·기업/연구책임자·연구원·소속임직원에 따른 제재조치

- 제재조치 평가단이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참여제한 기간, 대상, 환수여부 등 제재조치 내용을 정하며, 제재대상의 특성 및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연구자, 연구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음

- 귀책이 있는 기관단위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뿐만 아니라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참여제한 할 수 있음

  - 즉 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를 참여제한 대상으로 할 것인지 해당 사업에 참여한 단위*를 참여제한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검토해야함

    * 독립된 법인격 없는 사업장, 지사, 산하 연구소 등이 협약상 수행기관이 된 경우로서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그 단위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를 참여제한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이는 제재처분을 받은 기관과 실제 동일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하여 참여제한 효력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임

  -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나 제재처분을 받았던 기관 소속 연구책임자가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 혹은 실소유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설립법인에 대해 참여제한 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 만약, 어떤 회사가 신규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전 회사의 주요자산, 장비, 시설, 거래처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상 형태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관을 설립한 경우라면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기존법인 대한 제재처분의 효력은 신규법인에 미칠 수 있음

다. 귀책사유의 입증책임

- 제재조치 대상자 선택 시 귀책사유의 입증책임은 해당 사업의 주관청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에게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함

3. 승계 여부

가. 근거 조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나. 승계 대상 : 사업비 환수 대상인 기관, 단체, 기업인 경우에 한정

※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승계 규정이 없음

다. 승계 사유 :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

* 법인합병 내역은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함

라. 제재 처분 효력의 승계

- 법인이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이 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처분의 효력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법인에 승계되며(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제재 처분 사유는 발생하였으나 처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 실제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 양도자에 대한 제재 처분사유가 양수자(합병되는 법인 포함)에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함

  * 어떤 회사가 신규법인을 설립하면서, 이전 회사의 장비, 시설, 거래처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영업양도'로서 신규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새로운 신규법인에 대하여 제재조치의 효력 승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마. 개인 사망의 경우

- 개인이 사망한 경우 참여제한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 사업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의무는 제재처분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원칙상 사망한 연구자의 상속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나, 횡령·편취 등 개인이 금전상 이익을 취한 부분 등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자가 납부의무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임

4. 제재조치 처분시 감면 기준

-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 과제로 결정되었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에 따라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으로 인정된 경우
- 사업비 환수금 또는 미납 기술료를 제재심의 이전에 자발적으로 납부한 경우
- 제재조치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고의성이 없고 위반행위로 인한 사적 이익이 없거나 극히 경미한 경우
- 해당 연구과제의 성과를 포함하여 그간의 우수 연구성과 창출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3절 제재조치 평가단

1. 제재조치 평가단의 역할

-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제재조치 평가단은 제재 사유 발생 시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기간, 환수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등을 심의함

※ 부처에 별도의 근거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내용에 따라 심의 범위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단, 공동관리규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운영이 권장됨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6항 및 제27조의4 제2항

>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생략)
>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재조치 세부기준별로 제재조치 내용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를 거친 후 처분하여야 함. 단,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제한 시작일 재조정을 위하여 종전

처분을 철회하고 재처분을 하거나 처분 경정을 하는 것은 절차적인 사항이지 처분의 실체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재조치위원회, 농촌진흥청은 제재심의위원회 등으로 명명

2.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 공동관리규정에서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6항 및 제27조의4 제2항

>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⑥ (생략)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
>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생략)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각 부처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기술전문가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제재조치평가단을 구성해야 함. 특히 제재 심의시 적정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전문가를 제재조치평가단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함

- 제재심의 안건에 대해 제재조치평가단 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함

※ 제재심의 안건은 제재조치평가단 위원이 사실관계, 관련판례, 유사 처분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제재심의가 열리는 날로부터 최소 2일전에 위원에게 제공하고 이 경우 제재심의 안건의 보안을 위해 전문기관이 안건의 개요 또는 심의 자료를 제공하기 전에 보안서약서를 받을 것을 권장함

제4절 제재조치 절차

1. 절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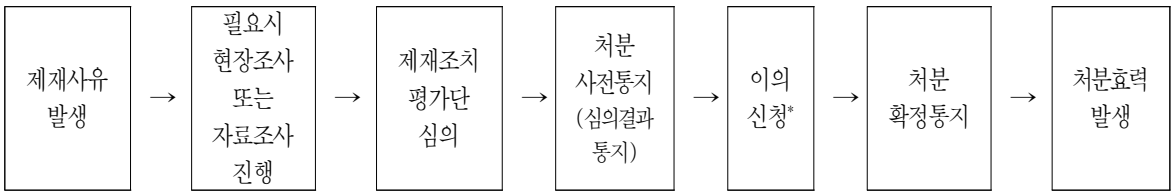

※ 행정절차법 상에서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로 규정함[1)]

※ 처분확정 통지가 처분대상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이후로 참여제한 기산일을 정하여 통지하고 참여제한 기산일 이전에 지체없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입력해야함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12항)

2. 처분 사전통지(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 후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사전통지 없이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 통지 시부터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

- 처분 사전통지 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처분의 제목
>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 6. 의견제출기한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참고: 행정처분 절차 -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단계가 제재조치 절차의 ‘이의신청’ 단계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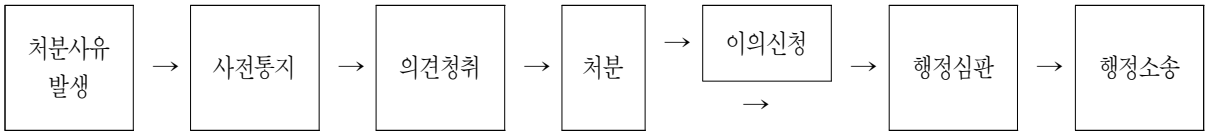

- 처분 사전통지는 확정 처분 전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통상의 평가결과 통보와 달리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대해서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처분 대상자에 포함된 연구책임자 등 제재조치 처분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하여야 함

3. 이의신청*

* 행정절차법 상에서는 “이의신청”이 아니라 “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로 규정함

가. 근거규정

- 공동관리규정은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7항)

  -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

  - 행정절차법(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또는 공청회를 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함

나. 이의신청 기한

- 이의신청의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그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줄 것을 권장함

다.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여 제재 내용을 재검토한 후 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함

- 처리 방식 등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

  ※ 일반적으로 제재조치 평가단이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도 심의하고 있음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① 신속히 처분하도록 하고(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 ② 제재조치 후 1년 이내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어야 하므로(동법 동조 제6항) 해당 서류·물건을 보관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4. 제재조치 통보

가. 문서에 의한 통보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따라서 문서로 제재조치 심의결과를 통보함이 바람직함

  -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를 적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 제2항)

  - 공문표지에 처분의 근거, 참여제한·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자 특정, 처분 이유 및 사유, 불복절차 안내 등의 사항을 기재함(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및 제26조)

나. 통보 대상자

-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함
  - 예를 들어 총괄책임자에게 참여제한 3년을, 주관연구기관에게 참여제한 3년 및 출연금 전액 환수를 통보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통보와 별도로 총괄책임자 개인에 대한 문서 통보를 하여야 함

다. 문서 송달 방식

- 문서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가능함
-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
- 교부 송달
  - 송달 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다만,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문서를 송달 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 전자통신망을 통한 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 받을 자가 송달 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
  - 전자우편주소를 통한 발송 또는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이 가능하도록 협약 내용*에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약 내용 예시

① 본 협약상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나 수신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기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에 대한 전자문서 방식의 통지, 통고는 다음 각 호 주 어느 하나의 것으로 한다.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한 발송
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등록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 전자우편주소 등을 수집하므로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 필요함

- 전자통신망을 통한 송달의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미확인 등의 상황을 줄이기 위하여 SMS(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공문 확인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가능한 우편송달을 함께 하는 것을 권고함

◉ 공시송달

-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라. 송달의 효력 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봄

◉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함.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참여제한 기산일은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부처에서 별도의 기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절차법을 고려하여 제재처분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로 정함

5. 제재조치 등록(참여제한 등)

- 제재조치(참여제한, 사업비환수, 제재부가금) 처분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해당 제재조치 사항을 통보하여야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2항).

- 제재처분을 한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의 실효성을 위해 처분확정 통지가 처분대상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해당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함(공동관리규정 제27조 12항)

  - 이때, '지체 없이'의 의미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직후 제재정보를 등록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늦어도 참여제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참여제한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참여제한의 실효성을 위한 것임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정보를 입력하여 정상적으로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제재조치 사항이 통보된 것으로 봄

- 제재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자체적으로 제재처분에 관한 정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제재정보를 등록한 관련 기관(전문기관 등)은 등록한 정보의 누락과 오류 여부 등을 NTIS의 검증기능을 통해서 분기별로 확인하고 수정한 후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2항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 3.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제5절 참여제한의 효력

1. 참여제한 기산일

-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결과를 통보한 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면 이의신청 심의 결과 절차가 종료된 시점) 이때 비로소 심의 결과가 확정된 것이며, 이에 따른 처분서가 송달된 날에 참여제한 처분이 최종 확정
- 참여제한의 효력은 처분확정 통보서가 송달된 때 발생하는데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에서 송달 시 효력발생일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을 고려하여 제재처분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발생하는 것으로 봄. 이때 참여제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을 참여제한 기산일로 정하여 처분해야 함
- 이미 다른 과제로 참여제한을 받고 있다면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참여제한 기산일을 정해야 함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별표4의2

>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
> 1. 적용기준
>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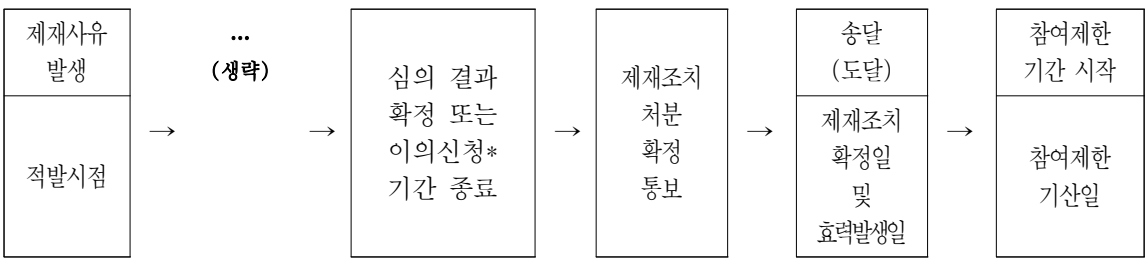

* 이의신청 절차가 사전통지 및 그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함

* 참여제한 기산일은 처분확정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이후로 산정하고, 참여제한 기산일 이전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입력해야함

2. 참여제한 기간 합산

가. 참여제한 기간 합산 원칙

- 제재사유를 기준으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나의 과제에서 복수의 제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년(과거에 동일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사유별 기간 합산 가능
- 제재조치평가단은 하나의 과제에서 하나의 제재사유만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제재사유 전부에 대해 심의하여 참여제한 등 제재를 부과해야 함
- 다수의 과제에서 각각 제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제재사유는 독립적인 것이므로 각각의 각 과제별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참여제한을 부과해야 함
- 이미 다른 과제에서 받은 참여제한 기간 진행 중에 새로운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개시되도록 함

나. 참여제한 기간 합산 예시

① (CASE1) A연구자가 '나'과제를 수행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와 제7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음. A연구자는 4년 전 '가'과제 수행 중 제5호(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의 사유로 3년의 참여제한을 부과 받은 이력이 있음

⇨ A연구자는 제5호의 사유로 이전에 참여제한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나'과제의 제5호 위반에 대해서는 별표4의2 2호 나목에 따라 '5년 초과 7년6개월 이내' 참여제한 가능. 제7호에 대해서는 '3년 이내' 참여제한 가능. 이때 별표4의2 1호 가목에 따라 '나'과제에 대해서는 10년을 한도로 제재조치 가능. 따라서 A연구자는 '나'과제에 대해 제5호,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총 10년 이내에서 참여제한 부과 가능. 이 경우 A연구자의 전체 참여제한 기간은 '가'과제로 인해 받은 참여제한 기간까지 합하여 최대 13년이 됨

과제 (가)	과제 (나)
5호 용도외사용 (3년)	5호 용도외사용(7년 6개월 이내) + 7호 연구부정(3년 이내) = 10년 6개월 이내 > 10년 이내(별표4의2 1호 가목)
총 13년 참여제한 가능	

② (CASE2) B연구자는 ●부처에서 '다'와 '라' 과제를, ▲부처에서 '마'과제를, ■부처에서 '바'과제를 수행 중이었음. 이 중 '다'와 '라'과제에서 제5호 위반으로 각각 참여제한 5년씩, '마'과제에서 제1호 위반으로 참여제한 3년, '바'과제에서 제7호의 사유로 3년의 참여제한 사유가 각각 발생함.

⇨ B연구자는 ●부처에서 참여제한 총 10년, ▲부처에서 참여제한 3년, ■부처에서 참여제한 3년을 합산하여, 총 16년의 참여제한을 받아야 함. 먼저 제재심의가 완료된 ●부처에서 먼저 참여제한 기간을 명시하여 처분하고 이를 NTIS에 지체 없이 등록함. ▲부처은 B연구자에 대한 ●부처의 10년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을 참여제한 기산일로 정하여 3년 처분함. 마지막으로 제재심의가 끝난 ■부처에서는 ▲부처의 3년 참여제한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부처의 참여제한 기산일로 정하여 3년 처분.

※ 이때 각 기관별 동시에 심의가 진행된 결과 참여제한 기산일이 같거나 기간의 중복이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기간을 조정하여 재처분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재조정된 사항을 반영해야함. 단, 이때 참여제한 기간 조정은 처분의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이므로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적법함

●부처 2개 과제 (다, 라)		▲부처 과제 (마)	■부처 과제 (바)
5호 용도외사용 (5년)	5호 용도외사용 (5년)	1호 중단실패 (3년)	7호 연구부정 (3년)
총 16년 참여제한 가능			

③ (CASE3) C연구자는 ●부처 3개 과제, ■부처 3개 과제 총 6개 과제를 수행 중이었음. 6개 과제에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적발되어 각각의 과제에서 5년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 6개 과제의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0년의 참여제한을 부과해야함

●부처 3개 과제			■부처 3개 과제		
5호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5년)	5호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5년)	5호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5년)	5호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5년)	5호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5년)	5호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5년)
총 30년 참여제한 가능					

3. 연구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한 조치

- 연구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참여를 재고해야함
- 연구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수행중인 연구과제는 조속히 협약을 해약(공동관리규정 제11조)하여야 함

  ※ 다만 연구의 진척도,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협약의 해약 시기를 조정하거나 협약 변경(공동관리규정 제10조)을 통해 연구책임자만을 배제 할 수 있음

- 해당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수행중인 연구과제는 협약변경(공동관리규정 제10조)등을 통해 연구과제에서 배제하여야 함

4. 과제참여 가능 시점

- 과제 참여자 선정 시 참여제한 여부 확인 시점은 신청 마감일 기준이므로, 과제 신청 마감일에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4항

  >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당시 및 평가기간 중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를 제외 대상으로 함

  * 공동관리규정 별표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 2. 평가위원 제외대상
  >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 여러 과제의 위반행위 발생으로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 처분한 이후 일부과제에서 참여제한의 효력이 소멸(취소 판결 확정, 처분취소, 기술료 및 환수금 납부 등)하여 합산된 참여제한 기간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참여제한 기산일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기간을 조정하여 재처분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재조정된 사항을 반영해야함

  ※ 이때 참여제한 기간 조정은 처분의 실체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 이므로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적법함

제6절 사업비 환수

1. 환수 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데(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항),
- 사업비 환수는 협약 등에 근거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 단체, 기업 중 환수사유 발생에 귀책이 있는 기관, 단체, 기업에 부과함

2. 환수금 납입

-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

  ※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국고로 귀속하도록 규정

- 환수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환수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해야하며, 정기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함

3. 연구장비 등 현물환수 가능 여부

- 협약에 정한 바에 따르며, 법령이나 규정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현금 환수 원칙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금 환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벤처기업부는 필요시 유형적 결과물을 환수 가능함을 규정하고, 관리지침에서 자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20. 다. 2), 3), 5)

> 2) 환수는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폐업, 파산 등 재산조사 결과 현금납부가 어렵다고 조사된 경우 유형적 발생품(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
> 3) 유형적 발생품으로 환수할 경우 환수액 산정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이고 잔존가격이 1백만 원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잔존가격의 산정은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6) 전문기관의 장은 환수 결정 후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대상금을 면제하거나 환수금 중 일부를 현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4. 환수금 납부 기한

-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환수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5. 환수금 납부기한 연장기준 및 절차

- 환수금 납부 대상자가 경영 악화 등을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장)은 사유를 판단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지급이행보증보험 제출 등을 조건으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시 또는 관리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20. 다. 6)

> 7) 환수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악화로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2. 2. ⑥ 중 일부

>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납부 연장을 요청하면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 요령에서는 '열위' 또는 '불량'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부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이상 경우 : 열위
> - 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C미만인 경우 : 불량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46조 제7항

> 제47조(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 ⑦ 전담기관의 장은 법적조치 결과 해당업체의 경영악화(기업 신용도 조사결과 열위 또는 불량인 경우) 등으로 인해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료요령 제8조 및 사업비요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하되,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6. 환수금 기한 내 미납 시 처리

- 환수금 납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 때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내로 정함

  ※ 독촉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

  ①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② 환수 결정 일자 ③ 환수 이유 ④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

  ⑤ 납부장소 ⑥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는 내용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절 국세체납처분

1. 국세체납처분의 개념

가. 체납처분

- 납부의무자가 기한 내에 임의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 만족을 위하여 자력집행을 행하는 공법상의 절차, 즉 체납자에게 강제이행을 구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의미

나.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 비교

- 국세체납처분 절차는 공법관계에 따른 우월적 지위에서 행해지는 반면, 민사집행 절차는 양 당사자 간 채권자와 채무자로서 동등한 지위에서 분쟁을 해결
- 따라서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경우 사법 당국의 협력 없이 스스로 강제적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집행권원(판결문 등)과 압류·추심명령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민사집행 절차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법원을 통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별도로 받아야 함

다.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의 경합

- 국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은 법률상 대등하므로 상호불간섭의 원칙에 따라 두 절차가 경합 시에는 각각 공매와 경매로 진행되어 해당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먼저 납부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함

라. 환수금의 법적 성격

- 공과금이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으로서, 환수처분에 의한 환수금은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에 해당 (국세기본법 제1조)

2. 국세체납처분 절차

[1단계]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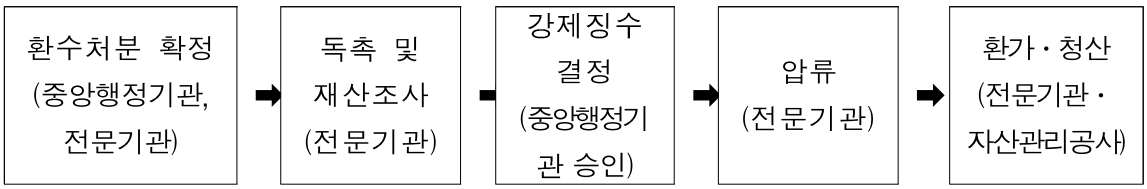

[2단계] 1단계 진행 후 미납액 발생 또는 1단계 진행 불가시 민사집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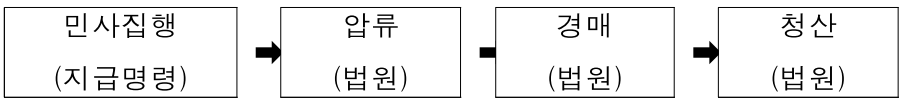

※ 1단계 체납처분완료 후에도 압류가 어려워 유체동산 등 추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2단계 민사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재산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받아 배당요구

※ 압류 재산이 없거나 징수가능 금액이 집행비용을 넘는 등 강제징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절차를 생략하고 법적조치 5년 유예(중단)

가. 환수처분 확정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환수처분에 따라 확정된 환수금 중 미납액에 대해서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가능

나. 독촉

- 환수처분이 확정된 후 환수금에 대해 독촉 절차를 진행하며, 독촉시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함

- 독촉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에게 실질적으로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

다. 재산조사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체납자에 대해 직접 재산조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신용정보조회 기관과 협약체결 후 개인의 상환여력정보 및 기업의 재무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이 체납처분 중)
- 신용정보조회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의 상환여력정보에는 자택정보 이력, 자택식별 요약정보(거주기간, 거주유형, 전용면적, 공시가격, 매매 상·하한가, 전세 상·하한가 등), 자택시세정보, KB아파트상세정보 등이 있음

  - 또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변동(예금거래활동 추정), 자택정보(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변동, 직장정보(직장명, 주소, 전화번호) 변동을 제공 받아 신용거래활동을 추정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전화독려, 예금압류 등이 가능

- 신용정보조회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재무정보로는 주거래 은행(예금채권압류에 활용), 신용등급체계(납부유예 판정시 활용), 경영진 정보, 주주현황(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주요재무정보, 산업재산권, 법정관리 진행상황, 부동산 경매정보(배당금 압류에 활용) 등이 있음

라. 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

-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의 말일까지 미납 시 체납처분 대상목록*을 적시한 공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체납처분 승인을 요청

  * (체납처분 대상목록) 해당 과제명 및 과제번호, 기관명 및 사업자번호, 납부기한일 및 미납액 등

- 1명의 체납자가 여러 과제에 연계되어 체납하고 있는 경우 부처로의 승인요청은 과제기준으로 하고, 제재조치평가단의 일정을 고려하여 다수 건을 묶어 월별 일괄 승인요청도 가능
- 체납처분 절차 진행은 체납자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체납자의 과제별 총 체납금을 합산하여 진행

마. 재산압류

- 부동산·차량 등 등기 자산, 채권, 예금, 주식, 무체재산권(특허 등 지식재산권) 유형 구분

없이 압류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문기관의 집행력에 한계가 있어,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것은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한 예금 가압류와 부동산 경매시 배당금 가압류임

-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조회기관으로부터 부동산경매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신용주체별로 제공받을 수 있음. 채무자가 권리자인 경우 체납자의 배당금 수령액을 가압류하며, 체납자가 의무자인 경우 채무자 소유재산에 대한 경매사실을 파악하여 배당요구·교부청구를 추진할 수 있음

- 재산조사 결과,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 포함)이 존재할 경우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우편으로 압류등기 촉탁하고, 관할 등기소로부터 압류등기필 통지(1주일정도 소요)후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통지서 및 압류조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바. 매각 및 청산

- 부동산, 차량 등 등기·등록 재산 및 무체재산권등(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의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맺어 위탁 처리하는 것이 실효적임

- 전문기관의 집행력을 고려할 때 예금채권에 대한 직접 추심은 어려우나,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한 가압류가 충분히 체납자에 대해 실효성이 있으므로 고액체납이 아닌 이상 가압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심

- 매각이 완료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배분 기일 및 배분계획서를 통보하면 전문기관은 배분희망 계좌정보를 포함한 지급동의서를 회신하여 청산 금액을 배분받음. 이때 체납자가 복수 부처의 과제에 동시에 체납한 경우에는 민법의 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이행일(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한 체납금을 먼저 충당

> *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4. 전2호의 사항이 같을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가. 중지(국세징수법 제85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 사업비 환수 제제처분에 대한 법적 소송 중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환수금 징수 정지 가처분이 있지 않은 이상 징수 절차를 진행해야 함

나. 유예(국세징수법 제85조의2)

-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환수금 납부 대상기관의 부도·폐업·회생·파산 시 처리 방법

가. 환수금 납부 대상기관의 폐업·부도 등으로 징수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은 환수금 납부대상 기관이 폐업, 부도, 파산, 심각한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환수금 징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징수절차를 중지할 수 있음
  -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징수절차의 중지 정보를 내부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1년 간격으로 폐업 여부 및 재산 상태를 파악함
- 징수를 중지한 경우라도, 환수금 납부대상 기관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중지되었던 징수 조치를 개시함
  - 폐업 또는 부도 상태에 빠지더라도 환수대상자의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래 영업을 개시하거나 자력을 회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환수처분 및 통지, 독촉 등 환수를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진행하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단계를 진행할 실익이 존재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징수절차 중지 기간 경과 후에도 환수금 납부 대상기관의 부도, 폐업, 파산 등의 상황이 지속되어 징수가 어려울 경우,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별표4

[별표4] 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제48조 제1항 관련)
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음.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3

4) 정산금, 환수금, 기술료
가) 파산 및 회생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음. 다만 보증보험증권이 있는 경우 보험기관에 해당 금액을 청구.
나)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강제 징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나. 환수금 납부 대상자의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금채권은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되므로, 환수금채권을 채권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을 신고 하여야함
  - 회생채권의 경우 '채권자집회 결의-법원 인가'를 통해 확정된 회생계획안에서 조정된 채권액 및 변제기간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은 소멸
  - 파산채권은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된 채권액이 법원의 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된 채권액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됨
  - 따라서 회생 및 파산 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액 범위 내에서 환수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 산업통상자원부는 회생·파산의 경우 회생·파산절차에서 인정된 상환액 만큼을 환수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2] 2 ⑥,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별표1])

5.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재판상 청구·지급명령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됨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 단 판결을 통해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민법 제165조)

- 환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고 과학기술기본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수 처분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 참고로 상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5년보다 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제8절 제재부가금 절차

1. 처분 대상

- 근거조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7항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비의 용도외 사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제재처분이므로, 용도외 사용 행위의 실질적 주체에게 부과하여 처분함을 원칙으로 함

2. 납부 기한

-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5 제2항)

  * 사전통지 통보가 아닌 처분의 확정 통보를 받은 날임

3. 수납 후 처리

-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5 제3항)

4. 기한 내 미납 시 처리(사업비 환수 절차 참고)

- 국세 체납처분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 근거조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8항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5. 소멸시효

-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권리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고 과학기술기본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 참고로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부칙 상 제재부가금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부칙[2014.5.28. 제12673호]
> 제3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부칙[2011.5.24. 제10708호]
> 제3조(제재부가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제15조제4항, 제19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부칙[2012.12.11. 제11538호]
> 제2조(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장 제재조치 사유별 처분기준

제1절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처별 근거법률, 운영요령,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 등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

<table>
<tr><th colspan="3" rowspan="3">제재조치 사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각호)</th><th colspan="4">제재조치</th></tr>
<tr><th colspan="3">참여제한</th><th>사업비환수</th></tr>
<tr><th colspan="3">공동관리규정 별표4의2</th><th>공동관리규정
별표5</th></tr>
<tr><td colspan="3">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td><td colspan="3">3년</td><td>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td></tr>
<tr><td rowspan="2">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td><td>국내로 누설·유출</td><td>2년</td><td>3년</td><td>4년</td><td rowspan="2">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td></tr>
<tr><td>해외로 누설·유출</td><td>5년</td><td>7년
6개월</td><td>10년</td></tr>
<tr><td colspan="3">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td><td colspan="3">3년</td><td>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td></tr>
<tr><td colspan="3">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td><td colspan="3">2년</td><td>환수하지
않음</td></tr>
<tr><td colspan="3">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td><td colspan="3">2년</td><td>환수하지
않음</td></tr>
<tr><td rowspan="2">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td><td>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td><td>3년
이내</td><td>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td><td>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td><td rowspan="2">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td></tr>
<tr><td>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td><td>4년
이내</td><td>4년
초과
6년
이내</td><td>6년
초과
8년
이내</td></tr>
</table>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환수하지 않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된 경우

- 제재조치 처분 :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음(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단서)
- 성실수행이란, 결과적으로는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목표 미달성에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연구수행 과정 및 방법이 성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 성실수행의 인정기준(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2)

  1. 당초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대비 기술개발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목표 대비 성취도
  - 연구수행주체가 제시한 연구노트,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 시험데이터 등 중간산출물, 목표 미달성에 대한 원인분석 등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한 부분 등

- **참고판례**

>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47969)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업비 환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의 요건을 '연구개발의 결과가 불량하여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고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함에 있어 단순히 당해 연구개발과제 결과가 최종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당해 연구개발과제 결과가 당초 정한 연구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일부 연구목표는 달성하였는지, 일부 연구목표는 달성하였다면 그 일부 연구목표가 최종 연구목표에 준하는 독자적 과학기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연구개발과제 결과가 다소 불량한지 아니면 극히 불량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행정법원 2017구합67292)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제재조치 처분 :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 비공개 최종보고서의 임의 공개는 본 호에 해당하여 제재조치 대상임
- '정당한 절차'란
  - 해당 사업에 관해 각 부처별 규정에서 정한 연구개발성과물 처분 또는 공개 절차 및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연구성과물 처분 또는 공개 절차에 따를 것을 요함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반하여 유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당한 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근거자료를 통해 '정당한 절차' 여부 확인 후 사안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음
  - 누설·유출된 연구개발 내용을 특정할 수 있고, 그 연구개발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과학기술 분야에 기여할만한 연구성과가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 내용이 누설·유출된 직후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되고 누설·유출 범위가 제한적이라 전파 또는 확산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기관의 합리적이고 성실한 관리감독에 불구하고 통제할 수 없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제재조치 처분 :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 정당한 사유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 사안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를 고려하여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면제할 수 있음

1) 해당 연구에 필수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핵심인력의 사망, 퇴직, 개인건강악화, 출산, 육아, 본국귀환, 사고,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임명, 상위과제의 책임자로 선정되어 기존에 수행하던 하위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해당 과제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전문기관의 장이 기존 연구기관에서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연구기관을 변경하고, 변경된 연구기관으로 연구성과물 및 연구비 잔액을 성실히 이관한 경우

4)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수행기관인 중소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되어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 연구개발과제를 포기하는 경우

- **참고판례**

> 연구 인력과 협력기관을 확보하지 못하여 과제 수행을 중단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087)

> ~법상 '소속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참여제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인 A는 과제의 수행 포기를 결정 또는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참여제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087)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재조치 처분 : 참여제한
- 다만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공동관리규정 제27조 제5항)
- 정당한 사유란 납부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외부적 사정이 있을 때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 참여제한을 감면할 수 있음

  - 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회생절차의 개시로 인하여 법원의 허가 없는 임의 변제가 불가하게 된 경우, 회생채권의 출자 전환으로 인하여 채권 일부가 소멸되는 경우 등 납부가 법률상 제약이 있는 경우(위와 같이 법률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납부가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단순 경영 곤란 또는 재무상태 악화와 같은 사실상 제약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기술료 미납의 경우, 관련 시장의 소멸, 표준·법·제도의 변화 또는 관련 법제도 등의 미비로 연구 결과를 실용화 또는 상용화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재조치 처분 :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제재부가금
- 용도외 사용이란, 서류조작, 업체와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연구비를 연구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 말하며, 편취, 횡령, 사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2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환수기준'에 명시된 내용 중, 사안에 따라 연구과제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본인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라면 '용도외 사용'으로 보고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연구비를 해당 과제의 연구수행에 사용하였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승인 등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은 용도외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재조치대상이 아니며 공동관리규정 별표2의2 ('2.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에 따라 정산을 통한 회수를 진행해야 함

  ※ 과제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재정산하여 회수할 수 있음

- (일시)전용인 경우에는 연구개발이 미치는 정도, 전용횟수(적발횟수) 또는 피해회복 여부를 고려하여 참여제한 및 환수금액을 감면할 수 있음

  - (일시)전용이란 적발되기 전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적발 전에 본래 용도대로 사용된 경우를 포함

  - 여기서 말하는 '적발하였을 때'란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의 자체 조사, 수사기관·국가권익위원회 등의 고지, 민원제기 등 사유를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용도외 사용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였을 때를 의미함

- 다음의 경우는 제재 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감면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이 자발적으로 용도 외 사용 사실을 확인하여 보고한 경우

  - 적발 이후 용도 외 사용금액을 원상에 회복한 경우

  - 과제 종료 후 용도 외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용도 외 사용금액을 공탁하는 등 자발적으로 반환한 경우

  - 자체 비용을 들여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을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제재조치 처분 : 참여제한

-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상으로는 연구책임자나 연구원 명의 외 제3자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까지 포괄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협약상 연구개발성과를 개인이 출원하지 않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였다면 협약위반(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8호)으로 제재사유가 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 6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정당한 사유'란 소관 부처의 관련 규정에 정한 연구성과물 처분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개인이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참여제한을 감면할 수 있음

  - 기술료를 완납하고 수행기관이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로서 과제책임자가 양여한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 제6항),

  - 개인기업이 수행기관인 경우로서 그 대표자겸 연구책임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5조 제7항 제2호 단서)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제재조치 처분 :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는 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하며,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규정(제3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며 세부적인 내용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참조

- '연구개발 수행'이란 과제선정을 포함하여 선정 후 협약이 체결되고 사업비가 지급되는 등 연구개발에 착수한 경우를 의미함

  - 협약이 체결된 이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본 호를 적용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도 가능함(공동관리규정 제11조 1항 12호)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외부 압력, 중복 수행, 기(旣) 개발품 신청, 청탁,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 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부정한 방법' 중 하나로 이미 개발한 기술이나 타부처에서 지원받은 기술개발 내용과 동일한 과제(기술개발 중복)의 경우 제재대상임

- 사업계획서,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보고 및 제출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본 호를 통해 제재조치 할 수 있음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재조치 처분 :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호~7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연구개발 수행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결과 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등

- 협약시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제재사유 외에 협약을 적법하게 유지하기 위한 원칙(타법상의 규정 포함)을 정할 수 있으며, 이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본 호를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음.

* 그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협약 또는 소관 부처의 세부 규정 등을 통해 수행기관의 의무로 명시되어 위반시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제2절 제재부가금(공동관리규정 제27조의4 제1항, 별표6)

1. 산정 기준

◉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함

*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합산액 대비 출연금 비중을 곱하여 산정(출연금이 민간부담금 현금과 각각 사용용도가 명확히 분리된 경우 출연금 비중 적용 제외)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가중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음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유용행위에 3인 이상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유용한 경우 등 그 밖에 용도외 사용의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가중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인이 수개의 과제를 수행했고 각 과제별로 제재부가금 사유가 발생할 경우,

(1) 1개의 과제에 가중사유가 여러 가지일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가중사유 비율을 적용

(2) 심의날짜와 관계없이 각 과제별로 제재부가금을 산정하고 가중사유도 각 과제별로 산정

3. 감경

-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전문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조사 과정 중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령 용도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의 대부분이 이미 계정에 회복되었거나 본래 용도대로 집행된 경우, 용도외 사용 금액의 대부분을 공탁하여 회복의 의지를 보이는 경우 등 감경 가능